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5.] [총리령 제1833호, 2022. 11. 2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사진을 추가하여 서류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전에는 정밀검사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국·품명·수출업소가 같으면 5년 이내 다시 수입할 때 정밀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던 것을 해외제조업소가 같다는 조건을 추가하여 수산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등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수입신고를 대행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총리령 제18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호나목1)·2)·4)·5)”를 “제3호나목1)·2)·4)·5), 같은 호 다목1)·3)”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가. 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

제28조제2항제3호 중 “시험·검사성적서(용도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입식품등이 별표 9 제2호가목5) 또는 같은 목 1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시험·검사성적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별표 9 제2호가목5) 또는 10)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제33조제2항제3호 중 “말한다) 및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를 “말한다),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제출한 사진”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곡류 또는 두류로서"를 "곡류·서류·두류 등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별표 7 제1호가목 단서 중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3) 중 "경과하여"를 "경과하였거나"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임산물·수산물"을 "임산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 본문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임산물·수산물"을 "임산물"로, "포장장소(수산물은 제외한다)"를 "포장장소"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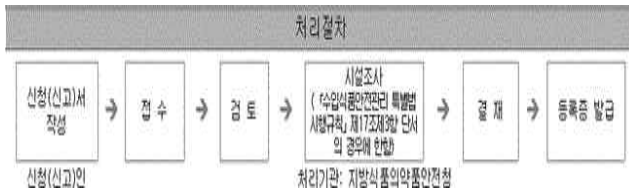
다. 수산물: 생산국·품명·수출업소 및 해외제조업소가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3)에 해당하여 정밀 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별표 13 II. 개별기준의 제3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1) 제조일자(유통기한) 또는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또는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3)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제2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p>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 물량에 대한 계약서 사본</p> <p>2. 제1호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자의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p>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로 한정합니다. 다만,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p> <p>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5) 또는 10)에 해당하는 경우</p> <p>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합니다)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라목에 따른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p> <p>4.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p>	수수료 없음
------	--	-----------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10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선적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별표 10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0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생산국·품명·수출업소 및 해외제조업소가 같은 수산물이 별표 10 제1호가목1)·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뒤쪽 Back page)

영업정보 Business Information	영업의 종류 Type of business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 Manufacturing/processing food or food additives [] 기구, 용기·포장 제조·가공 Manufacturing/processing apparatus, or containers and packages [] 농산물 포장([] 농장, [] 농장혼합시설, [] 집하장) Packaging agricultural products (Farm, Farm mixed facility, Collection Point) []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Manufacturing/processing functional health foods [] 수산물 제조·가공 ([] 수산물 제조·가공, [] 선박, [] 양식장) (Manufacturing/processing fishery products, Vessels, Aquaculture)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Whether a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applies to the type of food above, if applicable	[] 적용 안함 No [] 적용 Yes ※ 적용하면 그 시스템을 선택 If "Yes", check as applicable or specify the system [] HACCP [] ISO 22000 [] 기타 Other () ※ 인증기관의 인증 여부 Whether to be certified by a certification body [] 없음 No [] 있음 Yes ※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았다면 그 정보를 제공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 인증명 Title of certification () ■ 인증기관 Certification body () ■ 인증일 Certification date () ■ 만료일 Expiration date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The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the foreign food facility concerned agrees that if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deems it necessary, he/she may visit and inspect the foreign food facility.

[] 상기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 The applicant certifies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accurate.

※ 수입자인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로 확인 If "Importer", check the below additionally.
 []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위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등록갱신) 신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 The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the foreign food facility concerned has checked and agreed on the above registration (update of registered information, or renewal of registration)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제2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2)·(6)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2(1)·(3)·(4)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ame Act, I hereby apply for registration (update of registered information or renewal of registration).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식품안전정보원의 장 귀하

To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Republic of Korea

첨부서류 Documents required for application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증명 서류 - 해당 서류에는 업소명, 소재지 등 관련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증명 서류를 번역하여 제출할 경우, 공증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Documents issued by the exporting country's competent authority certifying that the foreign food facility is authorized, registered or declared according to the country'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food products - Such documents must include relevant information includ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foreign food facility. However, when such documents cannot be submitted, Confirmation Form of Registered Information of a Foreign Food Facility (Form 1-2) may be used instead. * When submitting translated version of such documents, they should be notarized.
--	---

유의사항 Note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갱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됩니다.
 If it is determined that a foreign food facility made registration or alteration or renewed its registr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its registration will be revoked according to Article 5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처리절차 Procedure Note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신고시기	1. 복신고 [] 2. 사전신고 []	검수번호	검수일자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	1. 농·임산물 [] 2. 수산물 [] 3. 축산물 [] 4. 가공식품 [] 5. 식품첨가물 [] 6. 기구 또는 용기·포장 [] 7. 건강기능식품 []	처리기간	식품등·건강기능식품 서류접수 2일, 현장검사 5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진균수시험대상 15일, 식품표시관리식품 14일, 가공식품시험대상 15일) 축산물: 서류접수 3일, 현장검사 5일, 무작위표본검사·정밀검사 18일	

수입신고인 (수입허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신고)번호
제조 기업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신고)번호
수입신고 대행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등록번호
	주소	

제품명	한글명	유형 또는 품목
출수량 (단위:)	순중량	kg 과세가격 (단위:US\$)
출할수	항번	화학관리번호
세번번호 (H& 번호)	용도	선화증권(B/L)번호
		품목제조보고번호(자사제조용 및 외화확특용에 한함) 위생증명서 발급번호(하등 축산물·수산물에 한함) 임대료명·재질, 제조·가공방법, 한글표시사항 기재 내용: 제26조에 기재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희외제조사	등록번호	회사명
[축산물 제외업종 (보장제리·가공장)]	주소	
도축장	등록번호	회사명
[축산물단 취급]	주소	
수출업소		회사명
	주소	
포장장소	등록번호	주소
선적일	년 월 일	선적항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검사(반입)장소	보관업 등록번호	상호 () 성명 주소
반입일	년 월 일	

제품상위	통조림 [], 방조림 [], 리프트포드식품 [], 혼입제품 [], 익상제품 [], 냉동식품(가열하여 섭취) [], 냉동식품(가열하여 섭취) [], 살균제품 [], 멸균제품 [], 건조제품 [], 유장 또는 유처리 제품 [], 갈은제품 [], 정제제품 [], 더 이상 기공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 해당 없음 []
------	---

이력번호(수입신고) 및 수입과제(만 해당함)	
유전자형식 표시 여부	표시함 [], 표시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유기식품등 여부	예 [], 아니오 []
영유아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의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식품조식처리 여부	완제품 조사 [], 원료조사 [], 해당 없음 []
주요자상표무척형식 식품 여부	예 [], 아니오 []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고장신식품 여부	영양성분 조절 식품 [], 경도조절제품 [], 점도조절 제품 [] 해당없음 []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여부	예 [], 아니오 []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 대상 여부	예 [], 아니오 []
유수수입업소 등록번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4쪽 중 제2쪽)

No.	원재료·제품코드	원재료명·제품명	원산지(국가·지역)	복합원재료(사용할 수 있는 식품·식품첨가물 사용인 경우)	외관(%)	No.	원재료·제품코드	원재료명·제품명	원산지(국가·지역)	복합원재료(사용할 수 있는 식품·식품첨가물 사용인 경우)	외관(%)
1						11					
2						12					
...						...					

제조·가공 방법: 한글표시사항 기재내용

신고인 제출서류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합니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수입식품등의 시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합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조기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품질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조다목에 따른 품질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구분유형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구분유형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닐 것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바. 수출계약서(국내 반입 후 계약이 국제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회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회계용으로 수입하는 일련번호 자체를 제조종원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97조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해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판매를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육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판매를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차. 기록부터 제작자의 서류 외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식품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반송동물의 화물을 사용했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첨가되지 않은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서류

유역사항

가.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첨부서류를 이미지파일(저파일 등)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제1쪽 "제품상대"란에는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 제2쪽 일련번호는 일련번호 부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모든 원재료만을 적되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주재료의 성분비율과 사용량을 첨부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적어야 하며,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식품 등 및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료코드와 명칭을 적습니다.
1) 제2쪽 건강기능식품의 주재료 해당 여부는 신고제출서류 건강기능식품인 경우에 한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거나 하는 주된 원료 또는 성분물 1개 이상 표시해야 합니다.
2) 복합원재료에 사용량을 첨부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해당 복합원재료의 제품유형을 적고 그 복합원재료의 사용량을 100% 기준으로 식품첨가물의 사용량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라. 제2쪽 "한글표시사항 기재내용"란에는 실제 제품에 표시한 한글표시를 그대로 적어야 하며, 일자 표시 등 표시위치를 명시하여 표시한 경우 해당 표시위치를 별도 표시한 내용도 적어야 합니다.
마. 검사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료율에 따릅니다.
바.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이 여러 개인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제1쪽 "유통기한"란에는 가장 빠른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을 적고, 제3쪽에 모든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별로 각각의 중량·판매가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다만, 육산물 중 식육·원육·식품류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사. 동일산으로 동일업체에서 수입한 동일제품은 하나로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육산물·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업의 선하증권(B/L)만으로도 해야 합니다.
아. "수출회사"는 제품을 실제로 수출하는 회사명 및 소재지를 신고해야 하며, "포장장소"는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쪽 및 제3쪽의 유통기한란에 품질유지기한을 적어야 하며, 신고인 제출서류 중 기록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차. 유통 또는 품목 기재란에는 농산물, 원산물, 수산물과 육산물 중 식육·원육·식품류에 대해서는 품목을 적고,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과 육산물 중 식육가공품·유가공품·발가공품은 유형을 적습니다.
카. 동일한 재질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식품과 접촉하는 부위와 그 색상이 다른 경우에도 1건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색상이라도 그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신고 처리상황(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재용)

등록분류	검사종류				신고확인증합결방법					
허가 검사	최초일	년	월	일	중요 일	최초일	년	월	일	사유
	최종일	년	월	일		최종일	년	월	일	사유
정밀 검사	검사기관				의뢰일	년	월	일	의뢰내용	
					성적일	년	월	일	성적번호	작성
검사결과조치구분					통보일	년	월	일		
행정 조치 내용	사유					통보문서번호				
수입신고 완료일	연도	년	월	일	수량 (단위:)	중량 (단위: kg)	금액 (단위: US\$)			
	입금 연도									
부적합회동제외결과 처리 담당 자	일자	년	월	일	내용					
	비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민원24(www.m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양쪽)

신고시기	A: 본신고 [] B: 사전신고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	1: 식품 등 [] 2: 식품첨가물 []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 4: 축산물 []	처리기간	식품등: 서류검사 2일, 정밀검사 10일 (진군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 대상식품 15일) 축산물: 서류검사 3일, 정밀검사 18일	

수하인	성명	개인통관고유번호
-----	----	----------

(수입회주)	연락처
--------	-----

신고인	성명	상호	영업등록번호
-----	----	----	--------

(구매대행)	주소	연락처
--------	----	-----

영업자)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	------------

송하인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	------------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	-------	--------

검사(반입)		(- -)
--------	--	---------

장소		
반입일	년 월 일	선하증권(B/L)번호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출수량 (단위: EA)	제품 URL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처리부서	
연락처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년 월 일
발 급 번 호		발 급 일 자	년 월 일
수입 신고인 (수입 화주)	상 호	대표자	
	주 소		
제 조 가 공 업 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수 입 신 고 대 행 업 자	성 명		
	주 소		
제품명		한글명	
총수량	(단위:)	순중량	(단위: kg)
과세가격	(단위: US\$)	검사종류	
화물관리번호		선하증권 (B/L)번호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수출업소	
HSK번호		유형 또는 품목	
용도		유통기한만료일	
유전자변형식품표시	표시함[] 표시하지 않음[] 해당 없음[]		
유기식품등 여부	예[] 아니오[]		
이력번호 (수입신고기관 해당함)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			

제 품 명 세

NO.	제품명	화물관리번호	수량 (단위:)	순중량 (단위: kg)	과세가격 (단위: US\$)	유통기한만료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OO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

